

Ia1.28.4

276

집무자료 91-47(법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1991. 5.

외무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외

부

집무자료 91-47(법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1991. 5.

외무부

목 차

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개관	3
1. 협약의 명칭 및 구성	3
2. 협약의 채택 및 발효경위	3
3. 협약의 취지 및 주요내용	3
4. 협약의 특징	5
5. 협약의 당사국현황	6
II. 협약 비준문제 검토	6
1. 서명추진 경위	6
2. 비준 방안	7
3. 비준의 의의	8
첨 부	9
1. 협약당사국 명단	11
2. 협약과 국내법 규정대비	12
3. 협약에 대한 각국별 유보내용	30
4. 협약전문(국·영문)	35

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개관

1. 협약의 명칭 및 구성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전문 및 3부, 54개조로 구성

2. 협약의 채택 및 발효 경위

- 1924.9.26. 국제연맹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 1959.11.20. 유엔총회, 결의 제1386(XIV) 호로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한 10개 항목의 아동권리선언 채택
- 1976.12.21. 유엔총회,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지정 (총회결의 31/169)
- 1978.12.20.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안 작성요청 (총회결의 33/166)
- 1989.11.20.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 (총회결의 44/25)
- 1990.9.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
- 1990.9.25. 아국서명

3. 협약의 취지 및 주요내용

가. 취지

-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이러한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 및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제공함.

나. 협약상 보호대상의 범위

- 외국인을 포함하여 자국 관할내에 있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다. 협약상 보호되는 권리의 내용

(1) 시민적 권리의 보호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표현·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형사처벌의 제한 등

(2)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의 보호

-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입양제도,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교육 관련 권리, 결손가정과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활동 참여권 등

(3) 기타 권리의 보호

- 학대, 유기, 착취, 마약, 약취·유인, 인신매매, 무력 분쟁 등으로부터의 보호

라. 협약당사국의 의무

(1) 협약상 권리실현 조치

-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경우, 가용 지원의 최대 한도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2) 정기보고서 제출

- 협약 내용과 관련된 국내조치 상황에 관하여 발효 후 2년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이후에는 매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 협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위원회는 임기 4년인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바. 협약의 서명 및 비준

- 협약 제46조에 따라 모든 나라에 서명이 개방되어 있으며, 제49조에 따라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이 되는 날로부터 발효함.
- 협약 발효요건 충족후 비준 또는 가입한 국에 대하여도, 당해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후 30일이 되는 날로부터 발효함.

4. 협약의 특징

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

- 기존의 법률이 성인의 시각인 보호의 관점에 주로 치중 이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자, 존엄성과 기본권을 적극 보장 받는 주체로 규정함.

나. 국제인권규약과의 유사성

-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국내적 시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시행여부를 검토하게 될 아동권리 위원회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등 구속력있는 규범이 되기 위해 국제인권 규약이 채택하였던 많은 방식을 따르고 있음.

5. 협약의 당사국 현황(1991.1.31. 현재)

○ 서명국: 130개국

○ 비준국: 66개국

○ 가입국: 4개국

○ 주요 미서명국

미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북한은 1990.8.23. 주유엔대사가 서명하였으며, 1990.9.21. 비준서를 기탁함.

II. 협약 비준문제 검토

1. 서명추진 경위

- 1990.1.9. 협약 가입관련 관계부처(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의견문의
 - 이견없음 통보
- 1990.3.23. 협약 가입관련 체육부 의견문의
 - 가입찬성 입장 표명

○ 1990.6.14. 관계부처(법무부, 문교부, 체육부, 보건사회부, 법제처)회의

- 가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국적법, 사회보장제도, 국내교육현실상의 문제점을 감안 실무적 검토를 계속하며, 우선 서명만 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

○ 1990.9.6. 서명건의

○ 1990.9.18. 대통령 재가

○ 1990.9.25. 서명(외무부장관)

2. 비준방안

- 협약 내용중 가족법 등 우리나라 현행 관계법령과 저촉되는 일부조항들에 대하여 유보하는 방식으로 비준

유보대상조항

- 제9조 3항(부모와의 교섭유지권)

-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지 못함.

- 제21조 가항(입양허가)

- 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 인정하나 민법 제871조는 부모의 입양동의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민법 제878조와 제881조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토록 허용함.

- 제40조 2항 나호(5) (상소권 보장)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를 인정하는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저촉됨.

3. 비준의 의의

- 협약이 조기발효하였으며, 협약가입 및 이행촉구를 위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개최 등, 유엔 주관하에 전개되고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킴.

첨 부

1. 협약 당사국 명단
2. 협약과 국내법규정 대비
3. 협약에 대한 각국별 유보내용
4. 협약 전문(국, 영문)

1. 협약당사국 명단

1991. 1. 31. 현재
밑줄은 비준 또는 가입국임

지 역	국 가
아 주 (21개국)	방글라데시, 호주, 인도네시아, 말디브, 몽고,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부르네이, 북한, 중국, 파키스탄, 일본, 대한민국, 부탄, 피프아뉴기니아, 사모아, 바누아투, 뉴질랜드
미 주 (32개국)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리제,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자마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 네비스,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기아나,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하마
구 주 (33개국)	알바니아, 오지리, 벨지움, 불가리아, 백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서독, 동독,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소련, 유고,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체코, 시아프러스, 터키
아중동 (48개국)	알제리아,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로코, 니제, 나이지리아, 루완다, 세네갈, 시에라레온, 수단, 스와질랜드, 토고, 튀니지, 탄자니아, 우간다, 예멘, 자이르, 짐바브웨, 시리아, 카메룬, 니미비아, 차드, 코모로, 지부티, 모잠비크, 잠비아, 웨이셜, 말라위
계	서명국: 130개국 비준국: 66개국 가입국: 4개국(기네, 모리셔스, 웨이셜, 말라위)

2. 협약과 국내법 규정 대비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전문 이동에 대한 기본권 존중 원칙과 특별보호 및 원조 선언		
제1조(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자. 단 국내법으로 단축가능	민법 제4조(20세를 성인 연령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소년법 제2조(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생활보호법 제3조(18세 미만자를 요보호 대상으로) 민법 제826조의 2(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민법 제807조(혼인 연령 남자 18세, 여자 16세)	1. 18세 미만자는 모든 국내법상 미성년 또는 기타 특별보호 대상으로 보호받으므로 협약과 충돌은 없음. 단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자가 혼인하여 성년의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협약이 허용하는 범위임. 2. 협약 해석상 태아는 아동의 정의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협약 기초자들의 취지였음.
제2조(차별금지) ① 지국 관할권내의 각 이동에 대한 차별금지 ② 이동이 가족의 신분이나 활동으로 인한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헌법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 헌법 제13조 3항(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1.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2조 2항(차별금지), B 규약 제26조(법앞의 평등), 동 규약 제2조 1항(차별금지) 2. 외국인 이동에게도 본협약 적용(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24조)
제3조(아동의 최상 이익 고려) ① 이동에 관련된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 이익 우선 고려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② 아동보호를 위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 ③ 이동을 위한 시설의 안전 및 검사 기준 마련	아동복지법 제3조 2항(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국가의 책임) 동법 제20조(아동 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제2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동법 제26조(인가취소와 사업정지 등) 유아교육진흥법 제7조(건강진단 등) 동법 제10조(폐쇄명령) 동법 제12조(지휘감독) 동법 제14조(새마을 유아원 교직원의 중별자격)	
제4조(당사국의 협약 실천 의무) 본 협약상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함		1.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2조 1항 참조(가용자원의 최대한도) 2. 당사국은 본협약상 시민적 권리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실천 의무를 부담.
제5조(부모 등의 책임 존중)	민법 제913조(친권자의 보호, 교양 권리의무)	
제6조(생명권) ① 아동의 생명권 존중 ② 아동의 생존과 발전 보장 의무	소년법 제59조(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 무기형 금지)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6조 5항(18세 미만자 사형금지)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p>제7조(성명 및 국적권)</p> <p>① 아동의 성명 및 국적에 대한 권리보장</p> <p>② 무국적방지 의무</p>	<p>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호적법 제49조 이하(출생신고)</p>	<p>1.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24조 2항(성명권), 3항(국적권)</p> <p>2. 한국인 여자가 출생지 주의 국적법 국가 출신 남자와 혼인한 경우 그 자는 무국적이 될 수 있음.</p>
<p>제8조(신분 보존권)</p> <p>① 국적, 성명,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보존권 보장</p> <p>② 상실된 신분 회복의 지원 의무</p>	<p>국적법, 호적법 등</p> <p>국적법 제3조 2호(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p>	
<p>제9조(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p> <p>① 아동은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 단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국은 분리 결정 가능</p> <p>② 분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의 의사표시권의 보장</p> <p>③ 아동의 부모와의 교섭 유지권 보장</p> <p>④ 구속 사실 등에 관한 국가의 통보 의무</p>	<p>민법 제924조(법원에 의한 친권 상실 선고)</p> <p>민법 제837의 2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 보장)</p> <p>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행정법 제58조(시체의 가장(假葬) 등) 동법 시행령 제166조(재소자 사망시 가족에 대한 통보)</p>	<p>친권상실이 반드시 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이에 의하여 분리될 수도 있음. 15세 미만자 입양의 경우 본인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음.</p> <p>15세 미만자의 입양 및 친권 상실 선고시 아동의 의사 표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p> <p>아동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함.</p> <p>출입국관리법상 퇴거강제에 의한 분리의 경우 가족에 대한 통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p>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p>제10조(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 보장)</p> <p>①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 보장</p> <p>② 타국 거주 부모와의 관계 유지권 보장</p>	<p>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출입국 관리법</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2조(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결합을 위한 출입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p>
<p>제11조(아동의 국외불법 이송 퇴치)</p> <p>① 아동의 국외불법 이송을 막을 의무</p> <p>② 이를 위한 양자조약의 체결 및 다자조약의 가입</p>	<p>형법 제289조(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 입양특례법 제18조(벌칙)</p>	
<p>제12조(의사표시권)</p> <p>① 자신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의사표시권 보장</p> <p>② 아동과 관련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표시권 보장</p>	<p>민법 제924조(친권상실)</p> <p>민법 제869조(15세 미만자 입양)</p>	
<p>제13조(표현의 자유)</p> <p>①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취득의 자유 보장</p> <p>② 필요한 경우 1항상의 권리 제한 가능</p>	<p>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p> <p>헌법 제37조 2항(기본권의 제한) 동법 제77조 3항(비상계엄하 언론·출판의 자유제한)</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9조 2항(표현의 자유 및 정보취득의 자유)</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9조 3항(권리의 제한)</p>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형법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금지) 동법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금지) 동법 제309조(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동법 제8조(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동 규약 제20조(표현의 자유의 제한)
제14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이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동법 제20조(종교의 자유)	1.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② 이동의 성장에 맞추어 부모의 감독권 및 의무 존중	민법 제913조(친권자의 보호·교양 권리의무) 미성년자 보호법 제3조(친권자의 의무)	2.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제10조)는 양심의 자유의 충돌문제 야기 가능
③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의 종교의 자유 등 제한 가능성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근거)	
제15조(결사·집회의 자유)		
① 이동의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보장	헌법 제21조 1항, 2항(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21조(집회의 자유) 동 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②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제한 가능성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근거) 동법 제77조 3항(집회, 결사의 자유의 제한)	
제16조(사생활의 보호)		
① 이동의 사생활, 기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위법적 간섭금지, 이동의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 공격 금지	헌법 제16조(주거의 보장) 동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동법 제18조(통신의 비밀) 동법 제21조 4항(언론·출판에 의한 명예나 권리 침해 금지)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7조(사생활, 기정, 주거, 통신, 명예, 신용의 보호)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② 1항상의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동법 제36조1항(가정생활 보호) 동법 제309조(명예훼손죄) 동법 제316조(비밀침해죄) 동법 제319조(주거 침입죄) 동법 제320조(특수주거 침입죄) 우편법 제51조(신서의 비밀 침해죄)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23조 1항(기정의 사회적·국가적 보호)
제17조(정보접근권 등)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정보원에 대한 이동의 접근권 보장. 이를 위하여		
가. 대중매체가 이동에 유익한 정보 및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		
나.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제작, 교환,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의 고취		
다. 이동서적의 제작, 보급을 장려		
리. 소수민족 이동에 대한 특별관심 장려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27조(소수민족의 권리)
마. 이동에 해가되는 정보 및 자료로부터의 보호		
제18조(부모의 양육책임)		
① 이동의 성장·발전에 관한 부모의 공동 책임	민법 제909조 1항(부모 공동의 친권행사) 동법 제913조(친권자의 자녀 보호·교양 의무)	
② 이동양육 책임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	모자복지법 이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생활보호법	
③ 취업부부 근로지 자녀를 위한 시설 준비	유아교육진흥법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제19조(폭력·학대·착취 등으로 부터의 이동보호) ① 폭력·학대·착취 등으로 부터의 이동보호 ② 이를 위한 사회계획 수립	이동복지법 제18조(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형법 제257조(상해죄) 동법 제271조(유기죄) 동법 제273조(학대죄) 동법 제274조(이동 폭시죄) 동법 제283조(협박죄) 동법 제288조(영리를 위한 약취·유인죄) 동법 제297조(정조에 관한죄) 이동복지법 제11조(요보호 이동의 보호조치) 동법 제20조(이동복지 시설의 설치) 동법 제21조(이동복지 단체의 육성) 동법 제23조(이동복지시설 중시지의 교육훈련)	
제20조(결손기정 아동의 특별 보호) ① 기정이 없는 이동에 대한 국기의 특별보호 및 지원 ② 이러한 이동의 보호에 관한 대안 마련 ③ 대안에서는 이동양육의 계속성, 이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 고려	이동복지법 제11조(요보호 이동의 보호조치) 동법 제12조(시설 보호 조치) 생활보호법 입양특례법	
제21조(입양제도) 입양은 이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되어야 함. 기. 입양은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민법 제866조 이하 (입양) 입양특례법	입양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878조), 법원 등의 허가제도는 없음(민법 제881조 참조). 특히 15세 미만자 입양의 경우 본인의 동의 불필요(민법 제869조, 입양특례법 제4조)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나. 국제간 입양은 지국내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함. 다. 국제간 입양에도 국내입양과 같은 보장장치를 함. 리. 국제입양이 관계자의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주어서는 아니됨. 마. 국제입양은 권한 있는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도록 국제적 약정이나 협정 체결을 강구함.	입양특례법 제9조 3항(해외입양에는 보사부장관의 해외이주 허가요) 이동복지법 제18조 6호(금품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양육 알선 금지)	
제22조(난민 이동의 보호) ① 난민이동에 대한 적절한 인도적 보호 ② 난민이동 지원 및 가족 재결합을 위한 국제협력 전개		출입국 관리법상 난민만을 위한 별도 조항은 없음. 이국은 난민의정서 미가입
제23조(장애 이동의 보호) ① 정신적, 신체적 장애이동의 충분히 풀워있는 생활을 누릴 권리 인정 ② 장애 이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아동 및 그 부모등에 대한 지원 장려, 보장 ③ 2항의 지원은 가능한한 무료로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이동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보호, 재활 지원, 사회진출의 대비 등에 관한 마련 ④ 예방의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관한 정보의 국제교류 촉진	헌법 제34조 5항(장애자 보호) 이동복지법 제18조 1호(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란시키는 행위 금지) 장애인 복지법 교육법 제143조 내지 145조(장애자 교육 및 훈련)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제24조(건강 및 의료지원)		
㉠ 건강 및 의료지원에 대한 아동의 권리	헌법 제36조 3항(건강보호)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의 건강관리)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제7조2항(의료보호)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12조(건강향유권)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가. 유아 사망률 감소	상기 근거법 외에도	
나.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의 보장	모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다. 질병 및 영양부족의 치유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 및 임신부의 보호 조치) 전염병예방법	
리. 산전·산후 임신부 건강관리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 예방법 등	
미. 건강 및 영양, 환경, 위생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바. 부모지도, 가족계획 등에 관한 교육		
㉢ 아동건강에 해가 되는 전통관습의 철폐		
㉣ 본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제25조(양육지정 아동의 권리)		
치료, 보호 등을 위하여 당국이 양육지정 조치한 아동의 치료 및 여타 모든 사정에 관하여 정기적 심사 실시		
제26조(사회보장권)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아동의 권리 인정	헌법 제34조 2항(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1.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9조(사회보장) 2. 국내사회보장 제도상 원칙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 급부시 고려사항		적으로 외국인은 배제되고 있음.
제27조(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아동의 권리인정	헌법 제34조 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11조 1항(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 확보에 대한 부모의 책임		
㉢ 본조 내용실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의무	생활보호법 제8조 이하(생계보호) 모자복지법 제12조(복지급여, 생계비, 양육비 등) 제13조(복지지급대여)의무	
㉣ 부모등으로부터 아동생계비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제28조(피교육권)		
㉠ 기회균등의 기반 위에서 교육의 권리인정	헌법 제31조(교육권) 교육법 제9조(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1.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13조(교육에 관한 권리), 동 규약 제14조(무상의무교육)
가. 초등교육의 의무·무상화	헌법 제31조 2항, 3항(무상의무교육) 교육법 제8조 및 제8조의 2(의무교육) 동법 제96조(국민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동법 제99조(국민학교 교육비 보조)	2. 국내초등교육의 완전무상화 미흡
나. 각종 중등교육의 추진	교육법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7(중학교 교육), 동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5(고등학교 교육), 동법 제129조 내지 제135조(기술학교 등에서의 교육) 동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장학제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다. 능력에 따른 고등교육의 기회 부여 라. 아동과 관련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나 지침의 보급 미. 학교출석의 고취와 탈락자 방지 조치 ② 학칙을 이동의 존엄성과 본 협약내용에 합치되도록 운영 ③ 문맹률 감소 등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교육법 제108조 내지 제128조의 11(대학교육)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징계)	
제29조(교육의 목표) ① 당시국은 다음을 아동 교육의 목표로 삼음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능력의 최대한 개발 나. 인권 및 국제연합 헌장원칙에 대한 존중심의 개발 다.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가치 및 티문화에 대한 존중심 개발 리.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미.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교육법 제94조(국민학교 교육의 목표) 동법 제101조(중학교 교육의 목표) 동법 제105조(고등학교 교육의 목표) 교육법 제94조 2호(국민학교 교육의 목표)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13조 1항(교육의 목적)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② 개인 또는 단체의 교육 기관 설치의 자유, 교육 시설 기준 정립	교육법 제82조(학교의 설립) 사립학교법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	사립학교법 제3조상 법인만이 정규학교 설립 가능
제30조(소수자 이동의 보호)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 및 원주민 이동에 대한 고유의 문화, 종교, 언어사용권 인정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27조(소수민족의 권리)
제31조(휴식, 여가, 문화활동) ① 휴식, 여가,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권 인정 ② 아동의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의 참여 및 균등한 기회부여	헌법 제22조(예술의 자유)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7조 다호(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 A 규약 제15조 1항 다호(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품에 관한 권리)
제32조(소년노동 보호) ① 경제적 착취와 위험하거나 아동교육에 방해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 ② 본 조항 실천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의 실천의부, 특히, 가. 최저 노동연령의 미련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13세 미만자는 근로자 고용금지) 동법 제51조(18세 미만자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고용금지) 아동복지법 제18조 2호(아동의 구걸행위 금지) 동법 제18조 4호(14세 미만자는 접객업소 근무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및 제51조 아동복지법 제18조 4호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근로기준법 비적용대상지의 경우 일반적 최저노동연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나. 근로시간 및 근로 조건의 규제	근로기준법 제53조(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감독) 동법 제55조(13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 이상 근무금지) 동법 제56조(18세 미만자의 야간 작업금지) 동법 제57조(18세 미만자의 시간외 근무제한) 동법 제58조(18세 미만자의 강내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비적용자에게는 최대 근로시간 등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다. 위반시 제재조치	교육법 제97조(국민학교 취학 연령 아동은 그의 사용이 의무 교육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됨)	
제33조(미약으로부터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내지 제111조(벌칙조항)	
미약의 불법사용, 생산, 거래로부터 이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	형법 제198조 이하(이편에 관한 죄) 대미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34조(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죄) 동법 제244조(음화등의 제조 금지) 아동복지법 제18조 5호(이동의 음행에 사용 금지) 윤락행위 방지법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이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취함.		
가. 아동이 위법한 성적 활동에 중시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이동을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외설스런 공연 및 자료에 이동을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제35조(아동의 약취유인, 매매, 거래 금지)	형법 제207조 내지 209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금지,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금지) 아동복지법 제18조 6호(권한없는 자의 금품을 대기로한 아동양육 알선금지)	
제36조(기타 형태의 착취금지)	아동복지법 제18조(아동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제37조(이동에 대한 고문, 시형 등의 금지)	아동복지법 제18조(아동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가. 아동에 대한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및 처벌 금지	헌법 제12조 2항(고문금지)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소년법 제59조(18세 미만자에 대한 시형, 무기형 배제)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7조(고문, 잔혹행위, 비인도적 처우금지) 동 규약 제6조 5항(18세 미만에 대한 시형 금지)
나. 위법적 또는 지의적인 아동신체의 자유 박탈 금지	헌법 제12조 1항(신체의 자유)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피고인의 구속)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9조 1항(신체의 자유)
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한 이동을 그 연령을 고려하여 인도적으로 대우, 성인과 분리 처우 및 가족과의 연락 보장	소년법 제57조(소년법 심리의 분리) 동법 제58조(소년법에 대한 친질대우) 형사소송법 제89조(피구속자의 접견권 보장) 행형법 제2조 3항, 제3조(미성년자의 분리 수용) 소년원법 제8조(소년원에서의 분리 수용)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0조(형사 피고인에 대한 대우)
리. 자유박탈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권 및 법률구조 등 보장	헌법 제12조 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동 제6항(구속적부심 청구권) 동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미성년자에 대한 국선 변호) 동법 제338조 이하(상소권보장)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9조 4항(구금에 대한 법원의 합법성 심사) 동 규약 제14조 1항, 3항(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p>제38조(무력분쟁시의 아동 보호)</p> <p>① 아동이 관련된 무력분쟁시 국제인도법 규칙의 준수</p> <p>② 15세 미만자의 적대행위 직접 개입금지</p> <p>③ 15세 미만자의 징집금지 및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기급적 최연장자 우선으로 징집</p> <p>④ 무력분쟁시 아동보호 조치</p>	<p>병역법 제8조 1항(18세 이상의 남지만 제국민역에 편입)</p> <p>동법 제11조(현역병 입영은 19세 이상이 원칙)</p> <p>동법 제19조(17세 이상자는 지원병 응모 가능)</p> <p>민방위 기본법 제17조 1항(20세 이상자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임)</p>	<p>아국은 1949년 제네바 4개협약 및 동 추가의정서 가입</p>
<p>제39조(피해아동의 사회복지 지원)</p> <p>유기, 착취, 학대, 고문,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 무력분쟁의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지를 지원함.</p>	<p>아동복지법 제11조(요보호 아동의 보호조치)</p>	
<p>제40조(소년법의 보호)</p> <p>① 범죄피의 아동은 그 연령과 사회복지를 고려하여 아동의 존엄성과 가치 증진에 합당한 방법으로 처우</p> <p>② 이를 위하여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며, 당사국은,</p> <p>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p>	<p>소년법 제9조(소년 보호사건의 조사방침)</p> <p>동법 제12조(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전문가 진단)</p> <p>동법 제24조(보호사건의 심리 방식)</p> <p>동법 제58조(소년법 심리의 방침)</p> <p>형법 제51조(형의 양정시 고려 사항)</p> <p>헌법 제13조 1항, 형법 제1조(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금지)</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0조 1항, 3항(피고인의 처우)</p> <p>동 규약 제14조 4항(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특별절차)</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5조(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금지)</p>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p>나.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 아동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 보장</p> <p>(1) 유죄판정시까지 무죄추정</p> <p>(2) 피의사실은 즉각 직접 통고함과 아울러 법률구조의 제공</p> <p>(3) 권한있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이 공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지체없이 판결</p> <p>(4)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증인 신문 참여권 보장</p> <p>(5) 상소권보장</p>	<p>헌법 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p> <p>헌법 제12조 5항(체포구속의 통지)</p> <p>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p> <p>소년심판규칙 제14조(소환의 방식)</p> <p>헌법 제12조 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p> <p>형사소송법 제33조 1호(미성년자에 대한 국선 변호)</p> <p>소년법 제17조(소년보호사건의 보호인 선임)</p> <p>헌법 제27조 1항, 3항(재판을 받을 권리)</p> <p>형법 제51조(형의 양정시 참작 사항)</p> <p>소년법</p> <p>헌법 제12조 2항(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p> <p>형사소송법 제148호(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의 거부권)</p> <p>동법 제161조의 2(증인 신문의 방식)</p> <p>동법 제163조(당사자의 증인신문 참여권)</p> <p>형사소송법 제338조 이하(상소권 보장)</p> <p>헌법 제110조 4항(비상계엄하 특수사건에 대한 단심 처리)</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4조 2항(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9조 2항(체포 사유의 통고)</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9조 3항(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p> <p>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4조 3항 미호(증인 신문권) 동 제148호(불리한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p> <p>1.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4조 5항(상소권 보장)</p> <p>2. 일정한 경우 비상계엄하 단심제를 허용하고 있는 헌법 제110조 4항과 군사법원법 제534조기 이에 저촉, 국제인권규약 가입 시에도 유보사항</p>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6) 통역권보장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의 보장) 법원조직법 제62조 2항(통역의 사용)	국제인권규약 B 규약 제14조 3항 비호(통역을 받을 권리)
(7) 이동의 사생활 존중	소년법 제24조 2항(소년보호 사건의 불공개 원칙) 동법 제68조(소년사건의 보도 금지)	
㉓ 소년법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 수립 특히,	소년법	
가. 형사미성년 연령 설정	형법 제9조(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 소년법 제4조 2호(12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가능)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이외의 조치 강구	소년법상의 특별절차	
㉔ 아동의 여건과 범행에 비례하여 보호, 지도, 감독, 상담, 보호관찰, 교육, 직업훈련 등 각종 대안 강구	소년법 제32조 이하(보호처분)	
제41조(협약과 상치되지 않는 국내·국제법령 존중) 본 협약의 규정은 이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가. 당시국 국내법, 나. 당시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에 포함된 보다 유리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 2 부 제42조(협약 홍보) 제43조(이동권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당시국의 국내조치 보고)		

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 규정	비고
최초 2년 및 이후 매 5년마다 보고 의무 제45조(이동권리 위원회의 권한)		
제 3 부 제46조 내지 제54조 서명, 비준, 가입, 효력 발생, 개정, 유보, 폐기, 기탁, 정본		
※ 협약 각조의 ()안의 제목은 원문에는 없으나, 편의상 붙인 것임.		

3. 협약에 대한 각국별 유보내용

(91.1.31. 현재)

협약규정	유보국가	유 보 및 선 언 내 용	시 기	비고
제38조	콜롬비아	○ 제38조 2항 및 3항이 적대행위 참여 및 징병 제한 연령을 15세로 정한 것과 관련, 동 연령을 18세로 해석할 것임을 선언함.	서명시	
제24조 및 38조	에콰도르	○ 제24조 해석시 전문 9번째절에 유념함. ○ 제38조에 규정된 최소연령이 너무 낮게 정해짐.	서명시	
제6조 제30조 제40조 2항 니호(5)	볼란서	○ 제6조가 자발적 임신중절과 관련된 국내 법령 규정시행에 장애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선언함. ○ 헌법 제2조에 비추어 제30조 적용배제를 선언함. ○ 제40조 2항 니호(5)를 제한적인 예외가 설정될 수 있는 일반원칙으로 해석함. 특히 경찰법원이 심리하는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 및 형사범죄가 이에 해당하나, 판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최종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피해 법원"에 상고가 가능함.	비준시	
제1조	과테말라	○ 제1조와 관련, 헌법 제3조가 "국가는 개인의 완전성과 안전은 물론 임신의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장,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선언함.	서명시	
	모리타니아	○ 국교인 회교의 신앙과 가치에 상반되는 조항 및 규정들을 유보함.	서명시	

협약규정	유보국가	유 보 및 선 언 내 용	시 기	비고
제20조 및 제21조	이집트	○ 회교율법이 입양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협약상 입양과 관련된 모든 조항 및 규정, 특히 제20조 및 제21조를 유보함.	비준시	
제9, 10, 18, 22조	서독	○ 제9, 10, 18, 22조의 해석과 관련, 비준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선언을 할 권리를 유보함.	서명시	
	영국	○ 비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유보나 해석선언을 행할 권리를 유보함.	서명시	
제24조 2항	고황청	<u>유보</u> ○ 제24조 2항 바호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귀절을 오직 도덕적으로 수락할 만한 가족계획 방법 즉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협약의 제조항 중 특히 교육(제13조 및 제28조), 종교(제14조), 결사(제15조) 및 사생활(제16조)과 관한 조항들의 경우 부모에게 1차적인 불가양의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해석함. ○ 협약의 적용은 도시국가로서의 특수한 성격과 양립되어야 함. <u>선언</u> ○ 전문 제9절이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협약의 여타 부분해석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함.	비준시	
	쿠웨이트	○ 회교율법 및 발효중인 국내법과 양립하지 않는 협약의 모든 규정을 유보함.	서명시	

협약규정	유보국가	유 보 및 선 언 내 용	시 기	비고
제21조 나, 다 라, 미항	아르헨티나	(유보) ○ 제21조 나, 다, 라, 미항의 적용에 앞서 국제입양 절차에 엄격한 아동의 매매 및 거래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동조항들의 관할지역내 적용을 유보함. (선언) ○ 제1조상 아동은 임신순간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선언함. ○ 협약 제38조가 무력투쟁에 아동의 이용을 단연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선언함.	서명시	
제1 조				
제38조				
제22조	모리셔스	○ 제22조를 명시적으로 유보함.	가입시	
제14조 1항 제21조	방글라데시	○ 제14조 1항을 유보함. ○ 제21조는 기존법 및 관행의 범위내서 적용함.	비준시	
입양관련 조항	말디브	○ 회교율법이 입양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입양과 관련된 협약의 모든조항을 유보함. ○ 말디브 헌법및 법령이 모든 말디브인은 회교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14조 1항을 유보함.	서명시	
제14조				
	이프기니스탄	○ 회교율법 및 국내법과 저촉되는 협약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비준시 유보할 권한을 유보함.	서명시	
제 2조	바하마	○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명시	
	아일랜드	○ 비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선언하거나 유보할 권한을 유보함.	서명시	

협약규정	유보국가	유 보 및 선 언 내 용	시 기	비고
	파키스탄	○ 협약규정들은 회교법의 원칙과 가치에 비추어 해석할 것임.	서명 및 비준시	
제17.29. 30조	터키	○ 헌법과 1923년 7월 24일자 로잔느조약의 문안 및 정신에 따라 제17.29.30조를 해석하고 적용할 권리를 유보함.	서명시	
제1.14.16. 17.21.22. 29조	인도네시아	○ 비준이 헌법상 한계를 넘어서는 의무의 수락을 의미하지 않음. ○ 좌기 규정들을 헌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것임을 선언함.	비준시	
제16조	말 리	○ 가족법규정에 비추어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함.	비준시	
제26조	말 타	○ 현행 사회보장입법 범위내에서만 제26조 상의 의무를 부담함.	비준시	
제38조 2항, 3항	우루과이	○ 협약에 규정된 15세대신 적대행위 직접 참여 허용 연령을 18세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봄.	비준시	
제21조 나항	베네주엘라	(해석선언) ○ 제21조 나항상 입양은 국제입양을 의미하며 해외양육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며, 동항이 국가의 아동보호의무를 해치지 않는것으로 해석함. ○ 입양이나 양육이 결코 금전적 이득을 초래해서는 아니됨. ○ 제30조는 제2조가 적용되는 케이스로 해석되어야 함.	비준시	
제21조 라항				
제30조				
제37조 다항	호 주	○ 제37조상의 일반적 원칙은 수탁하나 다항이 부과하는 의무의 준수는 불가함.	비준시	

구분	내역	단위	금액
1. 인건비	인건비	원	1,000,000
2. 재료비	재료비	원	2,000,000
3. 관리비	관리비	원	500,000
4. 기타	기타	원	1,500,000
합계		원	5,000,000

4. 협약 전문(국, 영문)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국문 번역문)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람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 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 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 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인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고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고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비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고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지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담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지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지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 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복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기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시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란은 생략)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Article 2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Article 3

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icle 7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rticle 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speedily re-establishing his or her identity.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2.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4.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Article 10

1.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2.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s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1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2.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Article 12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Article 13

1.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2.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5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6

1.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2.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Article 18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Article 19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Article 20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u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Article 2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3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4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Article 26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Article 27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9

1.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 (b)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for the national valu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hild is living, the country from which he or she may originate, and for civilizations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 (d)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peace, tolerance, equality of sexes, and friendship among all peoples, ethnic, national and religious groups and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 (e)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2. No part of the present article or article 28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s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Article 31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of the child to participate fully in cultural and artistic life and shall encourage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ic,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y.

Article 32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2. States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 (a) Provide for a minimum age or minimum ages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b) Provide for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 (c) Provide for appropriat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ither capital punishment n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shall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of his or her age.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Article 3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them in armed conflicts which are relevant to the child.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4.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n armed conflict.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Article 40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2.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a)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age below which children shall be presumed not to have the capacity to infringe the penal law;

(b) Whenever appropriate and desirable, measures for dealing with such children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 proceedings, providing that human rights and legal safeguards are fully respected.

4. A variety of dispositions, such as care, guidance and supervision orders; counselling; probation; foster 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care shall be available to ensure that children are dealt with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well-being and proportionate both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 offence.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 (a) The law of a State Party; or
-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PART II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Article 43

1.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well as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4. The initial election to the Committee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reafter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5.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7.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10.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The duration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reviewed, if necessary,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Article 44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o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a)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2. Reports made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Reports shall also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3.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of the present article, repeat basic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4.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6.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a)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b)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ny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at contain a request, or indicate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c)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undertake on its behalf studies on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d) The Committee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s 44 and 45 of the present Convention.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transmitted to any State Party concerne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PART III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0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